대학원 학칙

제정 2004.09.08

최근개정 2021.11.17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학칙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,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설치)** 이 대학교에 특수대학원인 문화예술대학원, 사회복지대학원(이하 "각 대학원"이라 한다)을 두며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05.03.02><개정 2007.09.17><개정 2014.12.01.><개정 2016.12.06>
 - 1. 문화예술대학원 :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창작이론과 실기를 교수하여 고급 문화예술체육인력을 양성한다.
 - 2. <삭제 2016.12.06>
 - 3. 사회복지대학원 :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이론과 실기를 교수하여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를 양성한 다.<신설 2007.09.17>
- 제3조(학위과정) ① 특수대학원인 문화예술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각 대학원에 전공을 둘 수 있다.<개정 2005.03.02.><개정 2007.09.17><개정 2016.12.06>
 - ② 각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 및 전문가과정을 둘 수 있다.
- 제3조의2(계약학과 등) ① 각 대학원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산업교육 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전공과 산업교육특별과정 등(이하 "계약학과"등 이라한다.)을 둘 수 있다.<신설 2009.01.06.>
 -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,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,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, 학생의 정원, 운영경비, 학생의 수업료, 학기 및 수업일수, 설치·운영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09.01.06.>
- 제4조(학과(전공) 및 입학정원) ① 각 대학원에 두는 입학정원(계약학과포함)은 [별표 1] 과 같다.<신설 2009.01.06.><개정 2012.09.01><개정 2014.12.01><개정 2016.2.25.><개정 2016.12.06.><개정 2018.11.13.><개정 2020.11.26.><개정 2021.11.17>
 -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,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 - 1.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<개정 2016.12.06>
 - 2.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
 - 3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 - ③ 총장은 제1항에 규정된 대학원 입학 총 정원내에서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2장 수업연한·재학연한·수업방법

제5조(수업연한)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<개정 2005.03.02><개정 2007.09.17>

제6조(재학연한)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<개정 2005.03.02><개정 2007.09.17>

제7조(수업방법) ① 수업은 야간, 주말주간, 계절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주간 에 수업을 할 수 있다.

제3장 학년도 · 수업주수 및 휴업일

제8조(학년도) 각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수업주수) 각 대학원의 수업주수는 매 학년 30주(매학기 15주)이상으로 한다.

- 제10조(휴업일)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 - 1. 하계 및 동계방학
 - 2. 개교기념일(5월 17일)
 - 3. 국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
 - ② 비상재해 기타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제1항 휴업일의 변경 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
 -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보충수업을 과할 수 있다.

제4장 입학, 등록 및 수강신청

제1절 입학

- 제11조(입학시기) 각 대학원의 입학(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)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이내로 한다.
- **제12조(입학자격)** 각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.
 - 1. 국내·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 자
 - 2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
- 제13조(입학전형)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다.
 - ② 일반전형은 서류전형, 면접고사, 전공과목에 대한 필답고사 또는 실기고사(예능계에 한함)로 실시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③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4조(편입학 및 재입학)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 - ②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.
 - ③ 편입학자격, 재입학자격 및 시행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.
- **제15조 (외국인학생)**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 할수 있다.

제2절 등록 및 수강신청

- 제16조(등록) ①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각 대학원의 학생은 4학기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제5조의 수업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
 - 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03.02><개정 2007.09.17>
 - ③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은 교육과학기술부령 "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"에 의한다.
- 제17조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며 소정의 기일 내에 하여야 한다.
 -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5장 휴학·복학·퇴학 및 제적

제18조(휴학) ① 질병, 군입대, 자녀양육(임신,출산 등)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

- 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6.12.06>
- ② 전항에 의한 휴학은 등록한 학생에 한하며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미등록 휴학은 재학하고 있는 학기의 방학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·유학·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- 제19조(복학) 복학을 원하는 자는 정하여진 기일 내에 복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.
- 제20조(자퇴)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제21조(제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한다.
 - 1.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
 - 2.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
 - 3.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
 - 4.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 된 자
 - 5. 학력 및 경력이 허위로 판명된 자
 - 6.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한 자

제6장 교과와 학점·전공변경

- **제22조(교과과정 및 교과목)** ① 학생은 교과과정에 정한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, 교과과 정 및 교과목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.
 - ② 각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교과과정 외의 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각 대학원은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청강할 수 있다.<개정 2005.03.02>
- **제23조(수료요건)** ①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 수료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05.03.02><개정 2007.09.17>
 - ② 수료자에게는 [별지서식 제2호] 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- 제24조(학점인정 및 성적평가) ① 교과의 이수는 학점단위로 하고,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 - ② 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등급 이상으로 한다.
 - ③ 학생은 수업시수의 3/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은 3.0 이상 이어야 한다.
 - ④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등급		A+	Α	B+	В	C+	С	F
점수	1	100~95	94~90	89~85	84~80	79~75	74~70	69이하
평점		4.5	4.0	3.5	3.0	2.5	2.0	0

- **제25조(편입생 및 재입학생 학점인정)** ①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원에서의 취득학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.
 - ② 재입학한 학생의 이미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.
- 제26조(국내외 다른 대학원의 수강 및 학점인정) ① 본교 대학교 각 대학원 및 타 대학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동일 강좌의 수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다.
 - ② 국내·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대학원별로 이를 이수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.

제27조(전공의 변경 및 전과) 동일학과 내에서의 전공의 변경 및 동일계열 내에서의 전과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.

제28조(학사과정과의 연계) <삭제 2009.06.01.>

제7장 학위청구논문

- 제29조(논문의 지도) ① 학생은 선정된 지도교수로부터 연구계획서제출 등 논문 또는 작품발표지도를 받아야 한다.
 - ② 논문 또는 작품발표지도 및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.
 - ③ 논문 또는 작품발표지도를 받는 자는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30조(논문지도교수) 논문 또는 작품발표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- 1.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<개정 2007.09.17>
 - 2. 학문영역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(타 대학 교수)를 지도교수로 위촉 할 수 있다.
- 제31조(논문 제출 자격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 -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.
- **제32조(논문의 제출 및 대체)**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학위청구논문은 논문 외에 유형의 결과물로 된 형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는 해당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 -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대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3조(논문의 심사) ①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 관련한 교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하되, 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한다.
 -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8장 학위수여

- 제34조(학위수여) ① 대학원별 각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청 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[별지서식 제1호, 제1-1호] 의 학위 기를 수여한다.<개정 2016.12.06>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대학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석사학위 청구 작품발표회 또는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다.
 - ③ 대학원별 석사학위의 종별은 [별표 2] 와 같으며 학위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.<개정 2005.03.02><개정 2007.09.17><개정 2009.01.06.><개정 2012.09.01><개정 2014.12.01.><개정 2016.12.06.><개정 2018.11.13.><개정 2020.11.26.><개정 2021.11.17>
- 제35조(학위의 취소) 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9장 학생활동, 장학금, 포상과 징계

- 제36조(학생활동 및 학칙준수) ①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.
 - ② 학생은 수업·연구 등 대학원의 기본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, 대학원학칙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.
 - ③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대학시설을 이용하여 학생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.

- 제37조(장학금 등) ①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규정으로 정한다.
 - ②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- **제38조(포상 및 징계)** ① 학업성적이 뛰어나거나 품행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 상할 수 있다.
 - ②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징계 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원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1. 근신
 - 2. 유기정학
 - 3. 무기정학
 - 4. 제적

제10장 공개강좌, 연구과정, 위탁생, 전문가과정

- **제39조(공개강좌)** ① 대학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[별지서식 제3호] 의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 - ② 공개강좌는 직무,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혹은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깊이 있게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
 -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기간, 수강정원,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.<개정 2009.06.01>
- **제40조(연구과정)** ① 제12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학위와 관계없이 특정한 교과목 또는 과제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의 연구과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 - ② 연구과정의 재학연한은 학기단위로 한다.
 - ③ 연구과정의 입학생은 필요에 따라 소정의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 - ④ 연구과정은 연구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.
 - ⑤ 연구과정 수료생 중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[별지서식 제4호]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 - ⑥ 본 대학원의 연구생의 이수한 동일과목에 대하여 본 대학원에 입학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인정을 할 수 있다.
- 제41조(위탁생)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하가할 수 있다.
- **제41조의2(전문가과정)** ① 각 대학원은 학위와 관계없이 전문가과정을 개설하며,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 - ② 전문가과정의 재학연한은 1년 단위로 한다.
 - ③ 전문가과정 입학생은 필요에 따라 소정의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제11장 대학원 조직 및 대학원 위원회

- **제42조(조직)** ① 각 대학원에 원장, 부원장, 운영책임교수 및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05. 03. 02.><개정 2009.01.06.><개정 2016.12.06>
 - ② 각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,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
 - ③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학과 또는 전공의 학사업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제43조(위원회) ① 전체 대학원의 학사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

다.<개정 2012.03.02>

- ②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.03.02>
- 제43조의2(구성 및 임기) ①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, 교학지원처장, 기획조정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과 교학 지원처장 중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9.25>
 - ②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대학원장이 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조신설 2012.03.02>

제44조(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)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2.03.02>

- 1. 입학,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- 2. 학과와 전공의 설치·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- 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- 4. 공개강좌·연구과정·위탁생·전문가과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학위심사에 관한 사항
- 6. 학칙 및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- 7.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
- 8. 학생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
- 9.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제1항 제1호, 제3호에서 각 대학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. 다만, 전체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조정 심의 할 수 있다.<항신설 2012.03.02>
- 제44조의2(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)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조신설 2012.03.02>
 - 1. 제44조 제2항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- 2. 기타 각 대학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45조(위원회 소집과 의결) ① 위원장은 필요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장 학칙개정

제46조(학칙심의위원회 구성) <삭제 2016.12.06>

제47조(학칙의 개정) 학칙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7일간 공고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대학원위원회, 규정심의위원회,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공포한다. <개정 2007.09.17><개정 2012.03.02><개정 2016.12.06>

제13장 준용규정

제48조(준용규정) 대학원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대학교학칙과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04. 9. 8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학칙의 폐지)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예술대학원학칙의 학위과정별 학과(전공)은 이 학칙에

의한 학위과정별 학과(전공)로 본다.

-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예술대학원학칙에 의한 당해 대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.
- ③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문화예술대학원 스포츠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전공명칭변경에 따라 체육전공 재적학생으로 본다.

부 칙(2005. 3. 2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05년 3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7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사회복지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모집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- 제3조(문화예술대학원 전공분리,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음악전공 재적생은 제27조의 전공변경 회수제한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분리 및 신설된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음악전공 재적생 중 소속변경을 원하지 않는 재적생은 음악전공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기를 수여할 수 있다.
 - ②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예술경영전공 재적생은 졸업 때까지 예술경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.
- 제4조(문화영상창업대학원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개정 학칙 제5조 수업연한 과 제23조 수료학점은 변경은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09. 1. 6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09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6. 1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0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3. 2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9. 1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개정학칙 시행일 전에 입학한 문화예술대학원 무대예술전공 재적 생은 졸업 때까지 무대예술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4. 12. 1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(학과(전공) 및 입학정원)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전공 신설, 명칭변경, 통합) 문화예술대학원 전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설, 명칭변경, 통합한다.

- 1. 문화예술대학원에 문화재보존전공,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, 아동음악전공, 뮤지컬전공을 신설한다.
- 2. 문화예술대학원 방송제작전공을 방송영화전공으로 변경한다.
- 3. 문화예술대학원 영상디자인전공을 영상콘텐츠전공으로 변경한다.

4. 문화예술대학원 미술전공과 조형미술전공을 통합하여 미술전공을 둔다.

제3조(대학원 통합) 문화예술대학원과 문화영상창업대학원을 통합하여 문화예술대학원으로 한다.

제4조(학과신설) 문화예술대학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과를 신설하고 전공을 둔다.

- 1. 미술·문화재보존학과 : 미술전공. 문화재보존전공
- 2. 체육학과
- 3. 문화영상창업학과
- 4. 영상엔터테인먼트학과 : 방송영화전공, 영상콘텐츠전공,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
- 5. 공연음악학과 : 음악전공, 실용음악전공, 아동음악전공, 음악치료전공, 뮤지컬전공
- 제5조(대학원 및 전공 통합,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문화영상창업대학원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영상창업학과 재적생으로 본다.
 - ② 문화예술대학원 조형미술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조형미술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.
 - ③ 문화예술대학원 방송제작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방송제작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영화전공 재적생으로 본다.
 - ④ 문화예술대학원 영상디자인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영상디자인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콘텐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.

부 칙(2016, 2, 25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12. 06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(학과(전공) 및 입학정원)는 2017 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전공신설, 명칭변경) 문화예술대학원 전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설, 명칭 변경한다.

- 1. 문화예술대학원에 문화스포츠복지전공, 문화예술공연전공을 신설한다.
- 2. 문화예술대학원 아동음악전공을 뮤직테크놀로지전공으로 변경한다.
- 제3조(학과제 폐지 및 캠퍼스별 전공) 대학원의 학과제를 폐지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캠퍼스별 전공을 둔다.
 - 1. 문화예술대학원(경기드림캠퍼스): 방송영화전공, 영상콘텐츠전공,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, 음악전 공, 실용음악전공 음악치료전공, 뮤지컬전공, 뮤직테크놀로지전공, 문화스포츠복지전공, 문화예술공 연전공
 - 2. 문화예술대학원(전북희망캠퍼스): 미술전공, 문화재보존전공, 체육전공, 문화영상창업전공
 - 3. 사회복지대학원(전북희망캠퍼스): 사회복지전공

제4조(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문화예술대학원 아동음악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아동음악전 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뮤직테크놀로지전공 재적생으로 본다.

부 칙(2017. 5. 10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, 11, 13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공신설) 문화예술대학원 뷰티패션디자인전공, 문화예술관광전공을 신설한다.

제3조(전공폐지) 문화예술대학원 음악전공, 뮤지컬전공을 폐지한다.

제4조(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음악전공, 뮤지컬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음악전공, 뮤지컬전공에 재적(복학, 재입학, 수료 등)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음악전공 재적생으로 본다.

제5조(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전공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
부 칙(2020. 2. 20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열변경) 문화예술대학원 예체능계열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, 문화예술관광전공을 인문사회계열로 변경한다.

부 칙(2020. 11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변경) 문화예술대학원 전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칭 변경한다.

- 1. 문화예술대학원 방송영화전공을 멀티미디어전공으로 변경한다.
- 2. 문화예술대학원 음악치료전공을 통합예술치료전공으로 변경한다.
- 3. 문화예술대학원 뷰티패션디자인전공을 뷰티융합디자인전공으로 변경한다.

제3조(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

- 1. 문화예술대학원 방송영화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방송영화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멀티미디어전공 재적생으로 본다.
- 2. 문화예술대학원 음악치료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음악치료전공에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예술치료전공 재적생으로 본다.
- 3. 문화예술대학원 뷰티패션디자인전공 재적생이 학적변동으로 뷰티패션디자인전공으로 재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뷰티융합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.

부 칙(2021. 11. 17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공신설) 문화예술대학원 융합조형전공을 신설한다.

제3조(전공폐지) 문화예술대학원 실용음악전공을 폐지한다.

제4조(학위변경)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재보존전공 학위를 문화재보존학석사로 변경한다.

제5조(학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엔 입학한 문화재보존전공 학생의 학위는 예술학석 사로 수여한다. [별표 1]

대학원 입학정원표

○ 대학원 입학정원(2022학년도)

l 캠퍼스	대학원 대학원	석사과정				
	네キ스	계 열	학과 및 전공	입학정원		
		예 체 능	멀티미디어전공, 영상콘텐츠전공,			
74.71	문 화 예 술 대 학 원		융합조형전공, 뮤직테크놀로지전공,			
경기			통합예술치료전공, 뷰티융합디자인전공,	50		
드림캠퍼스 			문화스포츠복지전공, 문화예술공연전공			
		인문사회	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, 문화예술관광전공			
T. H	문화예술대학원	AI =II L	미술전공, 문화재보존전공,	0.0		
전북		예 체 능	체육전공, 문화영상창업전공	20		
희망캠퍼스	사 회 복 지 대 학 원	인문사회	사회복지전공	15		

<개정 2014.12.01><개정 2016.2.25><개정 2016.12.06.><개정 2018.11.13.><개정 2020.2.20.><개정 2020.11.26.><개정 2021.11.17>

○ 대학원 입학정원(2021학년도)

캠퍼스	대학원	석사과정				
		계 열	학과 및 전공	입학정원		
	문 화 예 술 대 학 원	예 체 능	멀티미디어전공, 영상콘텐츠전공,			
24.21			실용음악전공, 뮤직테크놀로지전공,			
경기			통합예술치료전공, 뷰티융합디자인전공,	50		
- 드림캠퍼스			문화스포츠복지전공, 문화예술공연전공			
		인문사회	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, 문화예술관광전공			
T. H.	ㅁ뒨에스대하이	예 체 능	미술전공, 문화재보존전공,	20		
전북	문화예술대학원		체육전공, 문화영상창업전공	20		
희망캠퍼스	사 회 복 지 대 학 원	인문사회	사회복지전공	15		

<개정 2014.12.01><개정 2016.2.25><개정 2016.12.06.><개정 2018.11.13.><개정 2020.2.20.><개정 2020.11.26.>

○ 대학원 입학정원(2020학년도)

 캠퍼스	대학원	석사과정				
		계 열	학과 및 전공	입학정원		
		예 체 능 술대학원 인문사회	방송영화전공, 영상콘텐츠전공,			
24.21	문 화 예 술 대 학 원		실용음악전공, 뮤직테크놀로지전공,			
경기			음악치료전공, 뷰티패션디자인전공,	50		
드림캠퍼스			문화스포츠복지전공, 문화예술공연전공			
			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, 문화예술관광전공,			
T. H.		AI =II L	미술전공, 문화재보존전공,	00		
전북	문화예술대학원	예 체 능	체육전공, 문화영상창업전공	20		
희망캠퍼스	사 회 복 지 대 학 원	인문사회	사회복지전공	15		

<개정 2014.12.01><개정 2016.2.25><개정 2016.12.06.><개정 2018.11.13.><개정 2020.2.20.>

○ 대학원 입학정원(2019학년도)

캠퍼스	대학원	석사과정			
		계 열	학과 및 전공	입학정원	
경기 드림캠퍼스	문 화 예 술 대 학 원	예 체 능	방송영화전공, 영상콘텐츠전공,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, 실용음악전공, 음악치료전공, 뷰티패션디자인전공, 문화예술관광전공, 뮤직테크놀로지전공, 문화스포츠복지전공, 문화예술공연전공	50	
전북 희망캠퍼스	문화예술대학원 예 체 능		미술전공, 문화재보존전공, 체육전공, 문화영상창업전공	20	
	사 회 복 지 대 학 원	인문사회	사회복지전공	15	

<개정 2014.12.01><개정 2016.2.25><개정 2016.12.06.><개정 2018.11.13>

○ 대학원 입학정원(2017학년도)

캠퍼스	대학원	석사과정				
	내옥건	계 열	학과 및 전공	입학정원		
경기 드림캠퍼스	문 화 예 술 대 학 원	예 체 능	방송영화전공, 영상콘텐츠전공,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, 실용음악전공, 음악치료전공, 음악전공, 뮤지컬전공, 뮤직테크놀로지전공, 문화스포츠복지전공, 문화예술공연전공	50		
		011 -11 1	미술전공, 문화재보존전공,			
│ 전북 │희망캠퍼스	문화예술대학원	예 체 능	체육전공, 문화영상창업전공	20		
1 4 6 6 11 12	사 회 복 지 대 학 원	인문사회	사회복지전공	15		

<개정 2014.12.01><개정 2016.2.25><개정 2016.12.06>

○ 대학원 입학정원(2015학년도)

9H TU A	대학원	석사과정			
캠퍼스 	내약전	계 열	학과 및 전공	입학정원	
경기 드림캠퍼스	문 화 예 술 대 학 원	예 체 능	 ▶ 영상엔터테인먼트학과, 방송영화전공, 영상콘텐츠전공, 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, ▶ 공연음악학과, 음악전공, 실용음악전공, 아동음악전공, 음악치료전공, 뮤지컬전공 	40	
전북 희망캠퍼스	문 화 예 술 대 학 원	예체능	□ 미술·문화재보존학과,□ 물전공, 문화재보존전공▶ 체육학과▶ 문화영상창업학과	25	
	사 회 복 지 대 학 원	인문사회	사회복지전공	20	

<개정 2014.12.01><캠퍼스명칭변경 2016.2.25>

[별표 2]

대학원 학위수여 종별

○ 대학원 학위수여 종별

LII 본 이	석사고	사과정			
대학원	전 공	학 위			
	멀 티 미 디 어 전 공	어 사 참 서 비			
	영 상 콘 텐 츠 전 공	영 상 학 석 사			
	엔 터 테 인 먼 트 경 영 전 공	엔 터 테 인 먼 트 경 영 학 석 사			
	융 합 조 형 전 공	조 형 학 석 사			
	뮤직테크놀로지전공	음 악 학 석 사			
	통 합 예 술 치 료 전 공 :	통 합 예 술 치 료 학 석 사			
 	미 술 전 공 [미 술 학 석 사			
군 와 에 눌 내 약 편 	문 화 예 술 관 광 전 공 :	문 화 예 술 관 광 학 석 사			
	뷰 티 융 합 디 자 인 전 공 [디 자 인 학 석 사			
	문 화 예 술 공 연 전 공 (예 술 학 석 사			
	문 화 재 보 존 전 공 :	문 화 재 보 존 학 석 사			
	체 육 전 공	체 육 학 석 사			
	문 화 스 포 츠 복 지 전 공	제 푹 꼭 쓱 사			
	문 화 영 상 창 업 전 공 :	창 업 학 석 사			
사 회 복 지 대 학 원	사 회 복 지 전 공 /	사 회 복 지 학 석 사			

<개정 2005.03.02.><개정 2007.09.17.><개정 2009.01.06.><개정 2012.09.01><개정 2014.12.01><개정 2016.12.06.><개정 2018.11.13.><개정 2020.11.26.><개정 2021.11.17>

[별지 제1호 서식]

석 제 호

학 위 기

성 명:

생년월일: 년 월 일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(전공)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(작품)심사에 합격하여 〇 〇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.

논문(작품)제목 :

년 월 일

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○ ○ (인)

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(전공명칭)의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학위 ○ ○ (인)

학위번호 :

[별지 제1-1호 서식] [논문 면제과정]

석 제 호

학 위 기

성 명:

생년월일: 년 월 일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(전공)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와 시험에 합격하여 ○ ○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 었음을 인정함.

년 월 일

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○ ○ (인)

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(전공명칭)의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학위 ○ ○ (인)

학위번호:

[별지 제2호 서식]

^{제 호} 수 료 증 서
성 명: 생년월일: 년 월 일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○ ○과정에서 ()년 ()월간 ()을 전공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.
년 월 일
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🔾 🔾 (인)
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.
년 월 일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학위 ○ ○ (인)

[별지 제3호 서식]

공개강좌 이수증명서

성 명:

생년월일: 년 월 일

위 사람은 본 대학원 공개강좌과정에서 ○○○년 ○월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○○○(인)

[별지 제4호 서식]

제 호

연구실적증명서

성 명:

생년월일: 년 월 일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연구과정에 ()을 연구하고 그 실력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.

년 월 일

예원예술대학교 ○○대학원장 학위 ○○○(인)